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사역내용설명서(Job Description) 제정에 관한 연구

임창호(고신대)

1. 들어가는 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다(마16:18).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엡1:22), 교회는 그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교회의 모든 영광과 목적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원리 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직접 교회를 다스리지 않으시고 필요한 몇몇 직분자를 제정하여 그들에게 위임하였다(엡4:11-12). 교회의 직분자들은 주님의 뜻에 의해, 주님이 제정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청지기(딤후1:7)라는 이름으로, 혹은 주의 종(딤후2:24)이라는 이름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봉사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였고 사도바울은 이러한 직분제도를 교회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침을 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이래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청지기로 혹은 종으로 세워진 직분자들로 인해 교회들이 혼란을 치루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이다.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회에서의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문제는 한국교회의 병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자주 회자된다. 도대체 직분자들의 무엇이 문제일까? 상식의 차원에서 이를 이해한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적 요인들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아마도 교회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청지기로 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 직분자의 위치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생각보다, 세속적인 지도자 개념이나, 혹은 연공서열로 인해 얻어진 명예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주님의 교회의 직분자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역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교회가 직분자들에게 어떤 사역내용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직분자 본인들이 교육과 훈련받는 것을 게을리 했을 가능성도 있다.

세 번째로, 교회 직분자로서 인식도 하고 제대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 교육과 훈련이 잘못된 기준(신학적으로)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상과 같은 가정 가운데서 두 번째의 경우에 무게를 두고 본 글을 시작하려고 한다. 많은 경우에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사역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혹은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장로교는 목사직과 장로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다시 말해 역할분담(Job Description)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며, 목사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서로 누가 더 높으나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김동호,1999,155).

분명하고 정확한 사역내용을 설명하고 훈련한다면 예상되는 교회문제와 갈등요인을 충분히 예방하거나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회직분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사역내용설명서(Job Description)의 제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영학 분야의 인사관리 영역에서 사용되는 이 용어는 한국어로 직무내용설명서, 혹은 직무내용기술서라는 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는 교회용어의 성격상 직무(Job)를 사역으로, 기술(Description)을 설명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주제의 성격상 본글에서는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서술은 제외하였다.

2. 한국교회의 직분 구분

한국교회에는 각 교단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교단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의 네 직분을 두고 있다. 침례교에는 그들의 교리상 장로가 없지만, 평신도들이 연합 활동을 하면서 타교단의 평신도대표들(장로)과의 형평상 호칭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하여, 침례교단 안에 장로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2005년도에 총회적으로 열띤 찬반토론이 열리기도 하였다. 권사직을 제외하면 목사, 장로, 집사직은 초대교회 이후 전통적인 교회직분으로서 인정되어 왔다. 칼빈도 1541년 제네바시의 교회규정을 만들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목사, 교사(신학교의 교수), 장로, 집사의 넷으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직분은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다”고 하였다(홍치모,1996.165).

일반적으로 목사와 장로는 교회 전체를 치리하는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당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집

사와 권사는 당회의 처리 하에 있으며,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봉사직에 속한다. 이 네 직분은 교인들의 신임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선임되고, 인수를 받고 세워지며, 정년이 되면 은퇴하도록 되어 있다. 정년이 되는 나이 규정은 교단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70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단, 권사직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직으로서(감리교에는 유일하게 남자권사 제도가 있으나), 남녀유별한 유교 문화 가운데서 탄생한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직분이며 인수 없이 취임된다. 이 네 직분지는 항상 존속하는 직이라고 하여 항존직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외에 항존직원을 돕는 봉사자들로서 1년마다 갱신되는 서리집사가 있는데 이를 임시직원이라고 한다. 또한 선교사들이 초기 선교과정에서 교회사에 나타나지 않는 영수라는 제도를 택하여 왔는데(이정석, 2001, 110), 영수는 인수받지 않은 자로서 지교회의 대표격이었으며,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는 작은 교회에서 사실상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들도 1년 임시직원이었는데, 1955년 장로교 헌법이 바뀌면서 영수직은 없어졌다. 전도사의 직무가 목사의 교리와 교훈권 직무를 돕는 임시직이요, 서리집사가 인수집사의 봉사권을 돕는 임시직이라면, 영수는 장로의 처리권을 돕는 임시직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임택진, 1994, 89)

3. 한국교회의 직분에 대한 문제요인들

따라서, 한국교회 내의 네 직분은 크게 처리직(목사, 장로)과 봉사직(집사, 권사)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겠다. 봉사직으로서의 집사와 권사직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주장하는 직이라기 보다,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봉사직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비교적 큰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다. 반면에, 목사와 장로직은 교회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 그룹으로서 당회 구성원들이므로, 늘 교회문제의 중핵에 위치해 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목사와 장로직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처리자로서 목사와 장로직은, 당회라는 기구 안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상이한 의견을 조정하며, 합의에 이르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긴장과 갈등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목사와 장로간의 갈등은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이다. 단적이기는 하지만, “사도바울도 목회 못할 교회”가 있고 “천사도 쫓겨날 교회” 혹은 “예수님이 담임을 맡아도 해결하기 힘든 교회”라고 풍자되는 이러한 말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서 목사와 장로가 어떤 관계의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장로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당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그 책임은 물어야만 한다. 이 두 직분은 공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이기 때문이다. 교회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쪽이 더 나쁘고, 어느 쪽이 더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시시비비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목사와 장로간의 긴장과 갈등

은 필연 교인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초신자들에게 신앙적, 인간적 상처를 줄 뿐 아니라, 교회를 둘러싼 주위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있다. 요즈음 같은 경우, 교회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인터넷이나 언론이 앞을 다투어 한국교회의 병폐로 발전시켜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함으로서, 복음전도에 장애 요인으로 둔갑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야고보가 지적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약3:1)”는 말씀이 주는 의미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교회직분자들은 협력하여 교회의 갈등요인을 미리 예방하고, 표면화 된 갈등은 치유해야 하며, 갈등을 불러일으킬만 한 요소들은 미리 확인하여 차단해야만 할 것이다.

한 조사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목사가 장로에게 갈등을 느끼는 경우는 약 70퍼센트였으나, 장로가 목사에게 갈등을 느끼는 경우는 8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김경원,1999,171). 교회 내에서 가장 잘 협력해야 할 두 직분자의 관계가 실로 엄청난 갈등관계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장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목사의 설교 속에서, 또는 목회행정, 특히 인사정책과 재정문제로 가장 큰 갈등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목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로가 목사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목사의 리더십을 무시하거나, 당회 중에 장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며, 목사의 목회소신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경우 심한 갈등과 좌절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 때로는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목사나 다른 장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당회를 회피하거나, 당회 안의 모든 문제를 시시비비하며 고의적으로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극동방송에서도 2006년 목회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은 디름 아닌 장로(35%)라고 답했으며, 1996년도 조사에서도 목사들은 “장로와의 관계가 교회의 정책과 방향성을 결정하는 관건”(이상화,1999,131)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와 장로간의 화기에애한 사랑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함으로서, 또한 영적 성숙도를 높임으로서 해결을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안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편이 자신의 의견을 양보하고 신앙으로 인내함으로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교회문제를, 단순히 목사와 장로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또한 늘 한편이 양보하고 인내함으로서, 혹은 서로가 합의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교회사역은 신앙적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것이 다 신앙적일 수는 없으나, 신앙적인 사역일수록 더욱 합리적인 절차와 상식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이며 상식적인 것은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일이기 때문이다. 즉, 교회사역을 맡은 당사자들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식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회의 직분자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며, 시안이 바뀌고, 직분자가 바뀔 때마다 상대방에게 똑같은 양보와, 신앙적 인내를 요구하거나, 합의를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역

이 합리성과 상식 가운데서 신앙적일 때는 말할 수 없는 효과와 즐거움이 동반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왜 목사와 장로직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목사와 장로를 똑 같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목사의 사역내용과 장로의 사역내용을 각각 다르게 주신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위치와 사역내용을 존중하고, 인정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역내용, 그리고 장로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역내용을 본인 스스로가 명확하게 모르고 있다든지,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해는 갈등을 낳고, 갈등은 문제를 격화시키며 분쟁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긴장과 갈등의 연속인 기존목회는 점차로 전문화된 공동목회로 전환해야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 황성철목사의 진단은 그런 의미에서 호소력이 있다.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가고 있듯이, 교회사역도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화되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사역내용과 역할분담이 더욱 구체화되고 분명한 책임제로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황성철,1996,246). 역할이 불분명하면 사역도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로 책임전가에만 급급하게 되기 때문이다.

좋은 때는 모든 것이 은혜로 넘어가고, 인내도 되고, 양보도 가능하지만 사태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는 피차간에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이해관계로 풀어가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각 자의 위치에서, 합리적이고 상식에 따라 사역을 처리하려고 노력할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김상복,1999,96). 따라서 직분자 각자에게 부여된 사역내용을 분명하게 설정해 주고 충분히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역내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자료를 사역내용설명서라고 한다.

4. 사역내용설명서(Job Description)의 필요성

사역내용설명서라는 말은 본래 경영학의 인사관리 시스템 가운데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사역내용설명서란 사역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해 사역의 성격, 요구되는 개인의 자질 등 중요한 사항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최종태,2006,132).

사역 자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사역내용을 명시하여 책임소재 및 영역과 한계를 알도록 하는 설명서이다. 즉, 사역명, 사역요약, 사역의 위치, 사역의 책임, 관계보고, 작업조건, 그리고 책임감독자의 사역분석 결과 등이 명시된 것을 말한다. 자신이 해야할 영역과 분야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양, 그 일의 진행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관계성 전후, 최종적으로 결과에 분석까지 밝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 직분자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으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의 명칭은 무엇이며,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 사역의 중요성과 책임은 어떠한지, 그 사역은 어느 일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작업조건과 환경은 어떠한 것이며, 얼마만큼의 양이나 질의 사역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며,

최종 감독자나 책임자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가를 명시한 것들이다. 상사는 상사대로, 부하는 부하대로, 누구에게나 위치에 따른 사역내용설명서가 각각 필요한 것이다.

사역내용설명서를 활용할 경우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직명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 확인) 분명히 알게 되며, 해서는 안 될 경계선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둘째, 자신이 해야 할 그 사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일의 전후관계를 원만히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신이 맡은 일의 중요성이 어떠한가를 확인함으로써 그 책임감을 확고하게 지닐 수 있게 된다. 넷째, 자신이 맡은 일이 누구에게 향하며 또한 누구로부터 확인 받아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자신이 맡은 일을 하는 작업환경이 어떠한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여섯째, 자신이 맡은 사역이 어떤 결과물을 생산해 내야 하는가를 알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목표를 정할 수 있다. 일곱째, 자신의 사역을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확인받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됨으로써 사역의 라인이 분명해진다.

존피바디(John Peabody)는 사역내용설명서를 받은 사역자에게,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 사역내용설명서를 받은 사람은 첫째, 합리적인 목표를 세울 것, 둘째, 내용(사역내용설명서)을 명확하게 파악할 것, 셋째, 동료에게 도움을 청할 것, 넷째, 장애물에 대비할 것, 다섯째,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것, 여섯째,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할 것 등이다(이장직, 중앙일보, 2007.9.26)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교회직분자들에게 갈등이 유발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사역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즉 목사와 장로의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들의 역할과 명확한 사역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한계선은 무엇인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교인들 간의 사역자로서의 관계는 어떠한지, 자신의 사역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사역환경은 어떠한지, 자신은 어느 만큼의 사역양과 질이 요구되는 것인지, 자기 사역의 결과는 누구에게 평가 내지는 확인받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면, 갈등의 요소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존피바디가 권고하고 있듯이,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사역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동료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예상되는 장애물이 있는지를 살피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이 매우 효과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역내용설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사역분석(Job Analysis)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역분석은 분석적 방법에 의하여 사역 혹은 직분의 내용을 한정짓는 요인을 서술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역분석이란 다종다양한 개인사역의 특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최종태, 2006.122).

교회직분자의 경우 사역분석은 성경에 근거하여 각 교단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 교단헌법에 기술된 사역분석 내용을 원천적 자료로 삼았다. 편의상 본 글에서는 미국을 대표하는 두 장로교단(PCA, PCUSA)과 한국의 합동, 고신, 통합교단 세 교단의 헌법을 중심으로 교회직분자

들에 대한 분석 기술을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5. 교회헌법에 나타난 교회직분자 기술(사역분석)

교회헌법은 그 교단 설립 이래 고민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는 가운데 핵심적 요소만을 추려 법규로 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가장 높은 것들이다. 특히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각 장로교단의 헌법들은, 서문에서 한결같이 성경을 내규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경에 나타난 직분을 근거로 하여, 성경에서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각 직분의 위치를 분석하고 있다.

이 헌법들이 제시한 직분인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의 위치와 사역의 근거 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역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양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회(PCA,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미국장로교(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SA)와 합동교단, 고신교단 그리고 통합교단의 교회헌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미국장로회(PCA)교단 헌법(PCA총회,2002)

(1) 장로(강도장로와 치리장로 공유)의 일반적인 이름들(BCO 8-1)

- ① 감독 혹은 목자 : 그리스도의 양떼를 감독할 때
- ② 청지기 혹은 장로 : 양떼들의 모범이 되고 잘 다스릴 때
- ③ 교사 : 말씀을 해설하고 건전한 교리로 권면할 때

(2) 장로(강도장로와 치리장로 공유)의 일반적인 직무(BCO 8-3)

- ① 개별적으로나 연합하여 맡겨진 양떼를 감독
- ② 도덕적 부패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 ③ 다스리는 일
- ④ 권징하는 일
- ⑤ 교인집 심방(병자심방 포함)
- ⑥ 무지한 자 전도
- ⑦ 애통하는 자 위로
- ⑧ 교회의 어린이 양육보호

- ⑨ 스스로가 좋은 본보기
- ⑩ 불신자 전도와 제자 삼는 것
- ⑪ 교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
- ⑫ 교인들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 확인

(3) 강도장로(목사)의 직무(BCO 8-5)

강도장로의 일반적인 이름을 하나님의 대사, 복음전도자, 설교자, 청지기라고 함

- 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설하고, 설교하여 양 떼들을 먹임
- ② 성례집행
- ③ 담임목사는 직권상 당회장 직무를 맡음(BCO 12-2)
- ④ 담임목사는 직권상 공동의회 의장 직무를 맡음(BCO 25-4)

(4) 치리장로의 직무(BCO 8-8,9)

- ① 치리회(당회)에서 강도장로와 직분에 대하여 동일한 권한과 자격을 가짐
- ②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열심히 개발하여야 함
- ③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증진시켜야 함

(5) 집사의 직무(BCO 9-1,5)

- ① 예수의 분을 좇아 동정으로 보살핌과 봉사하는 직책
- ② 곤궁, 병약, 고독, 기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돕는 것
- ③ 교인들의 회사정신 양성
- ④ 헌물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방법을 고안
- ⑤ 기증되어진 헌물을 목적에 따라 분배하는 것
- ⑥ 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동산 관리
- ⑦ 교회 예배당과 부속건물을 수리 보존
- ⑧ 당회의 권위와 감독 아래서 사역함
- ⑨ 회계로서의 봉사

2) 미국장로교(PCUSA)교단 헌법(PCUSA총회,2006)

(1) 목사의 직무(BO G-6,0201-0202)

- ① 헌법규정에 따라 노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이행

- ②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며, 세례와 성찬예식 집행
- ③ 교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
- ④ 장로와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격려
- ⑤ 교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줌
- ⑥ 가난한 자, 무지한 자, 어려움에 있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
- ⑦ 치리하는 책임에 동참하여, 교인들에게 포괄적인 원칙을 따르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음
- ⑧ 집사들과 더불어 동정과 증거와 봉사의 사역에 함께 함
- ⑨ 담임목사는 직권상 당회장이 된다. 당회는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 당회장이 없이는 회의를 가질 수 없다(BO G-10,0103)
- ⑩ 담임목사는 직권상 공동의회 의장이 된다(BO G-7,0306)

(2) 장로의 직무(BO G-6, 0301-0304)

- ① 목사와 함께 지도력, 치리권, 권징을 행사함
- ② 개체교회와 에큐메니칼 관계를 포함한 전체교회의 삶을 위한 책임을 짐
- ③ 당회원으로 충실히 섬겨야 함
- ④ 상급치리회의 총대로서 선출되었을 때, 목사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참여함
- ⑤ 생활태도로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생활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
- ⑥ 목사와 더불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와 봉사를 하도록 격려
- ⑦ 교인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도와줌
- ⑧ 가난한 자, 병든자, 외로운 자, 억압당한 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
- ⑨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과 조직체에 대해 목사와 당회에 알려야 함
- ⑩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시무목사가 없는 곳에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음
- ⑪ 특별한 경우 노회의 허락을 받아, 성찬예식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3) 집사의 직무(BO G-6, 0401-0407)

- ① 궁핍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 돌보아 줌
- ② 당회가 위임한 다른 임무들을 수행해야 함
- ③ 당회의 권위와 감독하에 있어야 함

3) 합동교단 헌법(합동총회,2000,152-160)

(1) 목사의 직무(4장3조)

- ①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

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들을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당한 자를 위하고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②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③ 선교사로 외국에 선교할 때는, 성례를 거행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조직할 권한이 있다.

④ 목사가 기독교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시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

⑤ 기독교교육지도자로 목사나 노회가 지교회나 교회에 관련되는 기독교교육 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

(2) 장로의 직무(제5장4조)

①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치리장로는 교인의 택함을 받고 교인의 대표자로 목사와 협동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지교회 혹은 전국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②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주께 부탁받은 양무리가 도리오해나 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당회로나 개인으로 선히 권면하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회에 보고한다

③ 교우를 심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우를 심방하되 특별히 병자와 조상자를 위로하며 무식한 자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며, 간호할 것이니, 평신도보다 장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 책임이 더욱 중하다.

④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장로는 교인과 함께 기도하며, 위하여 기도하고 교인 중에 강도의 결과를 찾아본다.

⑤ 특별히 심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3) 집사의 직무(제6장3조)

①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협력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재정을 수납 지출한다.

(4) 권사의 직무(제3장3조) - 교회의 임시직원 항목에 소속 -

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방문하되 병환자와 환난을 당하는 자와 특히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돌보며, 권면하는 자로 제직회 회원이 된다.

4) 고신교단 헌법(고신총회,1992,189-199)

(1) 목사의 직무(5장33조)

- ①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 ②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 ③ 찬송을 지도하는 일
- ④ 성례를 거행하는 일
- ⑤ 하나님의 사자로서 축복하는 일
- ⑥ 교인을 교육하는 일
- ⑦ 교인을 심방하는 일
- ⑧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2) 장로의 직무(제6장47조)

- 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 ② 교회의 영적 관계를 살피는 일
- ③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 ④ 교인을 권면하는 일
- 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 ⑥ 언약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
- ⑦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 ⑧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알리는 일

(3) 집사의 직무(제7장56조)

- ①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빈곤한 자를 돌보며,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4) 권사의 직무(제9장68조) - 교회의 임시직원 항목에 소속 -

①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5) 통합교단 헌법(통합총회,1994,189-201)

(1) 목사의 직무(5장26조)

- 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2) 장로의 직무(제6장39조)

①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치리회원이 되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장을 관리하며,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권면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3) 집사의 직무(제8장50조)

①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한다.

(4) 권사의 직무(제8장52조)

① 권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제직회의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심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6. 교회헌법에 나타난 교회직분자로서 목사와 장로의 사역분석

이상 5개 장로교단의 헌법에 기술된 직분자들의 사역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개략할 수가 있다. PCA교단의 헌법의 경우 목사와 장로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목사를 강도장로, 장로는 치리장로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어서 장로로서 강도장로(목사)와 치리장로(장로)가 공통으로 해야 할 사역을 12가지로 나누었다.

맡겨진 양떼 감독, 도덕적 부패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다스리는 일, 권징하는 일, 교인집 심방(병자심방 포함), 무지한 자 전도, 애통하는 자 위로, 교회의 어린이 양육보호, 스스로가 좋은 본보기, 불신자 전도와 제자 삼는 것, 교인들과 더불어 또한 그들을 위한 기도, 교인들 가운데서 말씀의 열매 확인하는 것 등이다.

목사가 장로와 구별되는 고유한 사역은, 말씀선포(설교)하는 일, 성례집행하는 일, 당연직으로서 당회장과 공동의회 의장이 되는 일이다. 설교와 성례집행은 신약시대 이후로 이어져 온 사도직의 계승으로서의 사역이요, 당회장과 공동의회 의장 직을 맡는 것은 교회의 행정적 최고책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는다는 말이다.

치리장로로서 구별되는 고유한 사역은, 당회원으로 목사와 동일한 파트너의 역할을 갖는 것과 성경을 가르칠 능력을 계발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당회의 장인 목사를 협력하여 당회원으로 사역하는 일과,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계발

하라는 내용이다.

PCUSA교단의 헌법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가 각각 별개의 직분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점이 PCA교단과의 차이점이다. 즉, 목사는 장로 중에 하나가 아니고 목사 고유한 직분이고, 장로는 직분상 장로라는 것이다. 목사는 노회원이 된다는 점이 들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PCA 교단의 헌법의 목사로서의 기술과 거의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다.

장로의 구별되는 고유사역 역시 PCA교단의 것과 비슷하지만, 5년부터 10년까지는 장로로서 어떻게 목사와 협력하여 사역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회의 허락 하에 성찬 식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의 합동교단과 고신교단의 헌법에 나타난 목사와 장로의 사역은 미국 PCA교단 헌법에 기술된 것과 거의 일치한다. 세 교단이 같은 신학사상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미국헌법과 다른 것이 있다면, 합동, 고신, 통합교단 공히 목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헌법들이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목사는 노회에 의해 임직되는 자로서, 첫째 교회의 최고 행정책임자요, 둘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요, 셋째 성례전을 집행하는 자요, 넷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기도를 하는 자라는 점이다. 동시에 장로는 교인에 의해 택함을 받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의 치리와, 심방, 돌봄, 가르침, 당회를 운영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다. 헌법상 장로는 목사와 당회에 교인들의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항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인들을 보살핌에 있어서 언제나 목사를 협력하는 직분자의 위치에 있다.

목사는 사도직을 계승하는 사역자로서 일정기간의 신학교육을 통하여 노회가 지역교회 목회를 위하여 세우는 전문가이며, 장로는 목사를 돕는 협력자로서 지역교회에서 택함을 받아 세우는 평신도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집사(안수집사)는 미국이나 한국 동일하게 당회의 지도하에 봉사와 구제, 그리고 회계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분자요, 권사는 한국의 고유한 직분자로서 목사를 도와서 교인심방과 격려 및 기도로 돕는 여성직분자로 규정하고 있다.

7. 나가는 말

1996년 한국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교갱협)에서 장로교회교인들을 상대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때에 나온 교인들의 반응에서 오늘날 목사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응답자들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67.26퍼센트가 “설교”라고 응답했고, 2번이 “기도”로 12.11퍼센트였고, 3번 “성경연구”가 8.07퍼센트였고, 4번 “심방”이 4.08퍼센트였다.

목사 자신도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사역내용이 설교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가 88퍼센트로

나왔다. 목사들도 자신들의 사역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증거이다(이상화,1997-8,124).

오늘날 어떤 유형의 목사가 요청되는가? 라는 질문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유형”이 32.29퍼센트로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교인을 자상하게 돌보는 유형”이 24.22퍼센트를 차지했다. 그 외에 “탁월한 영성으로 절대적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이 12.11퍼센트, “책임지고 모든 일을 결정하는 유형”이 11.66퍼센트로 이어졌다(이상화,1997-5,94-95).

이 응답에서 목사의 사역은, 말씀을 전하고, 연구하며 기도하는 일이며, 적어도 목사는 지도자여야 한다는 교인들의 기초의식이 잘 나타났다. 교인들은 설교하는 자로서의 지도자 목사를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교회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사의 위치와 사역과도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장로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치리”라고 대답한 비율이 29.15퍼센트로 가장 많았고, “기도”가 27.35퍼센트, “심방 및 상담”이 19.8퍼센트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오늘날 어떤 유형의 장로가 요청되는가? 라는 질문에 “교인을 자상하게 돌보는 유형”이 27.35퍼센트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유형”이 25.11퍼센트,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도록 돕는 형”이 24.22퍼센트를 보였다.

목사의 설교사역이 과반수가 넘는 67.26퍼센트가 나올 정도로 사역내용이 분명하게 비쳐진데 비해, 장로의 치리사역에 대하여는 29.15퍼센트 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많은 교인들이 장로의 역할과 사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교인들이 장로를 목사와 협력하는 교회의 치리자로서 심방, 기도하는 자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역시 교회헌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에 대한 사역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 목사와 장로는 서로의 사역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갖고 있다. 서두에서도 밝힌 대로, 목사는 장로에 대하여 약 70퍼센트가 갈등을, 장로 역시 목사에 대하여 80퍼센트가 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장로는 목사의 설교에 대하여, 그리고 목회행정, 인사정책, 재정정책에 대하여 갈등이 가장 심하다고 했다.

이는 목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전문사역인 설교와, 교회 최고책임자로서의 행정에 대한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말은 전문가로서 목사 자신이 미땅히 수행해야 할 설교와 교회지도력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자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로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내용인 설교와 교회지도자로서의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장로가 목사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하며 목사의 리더십을 무시하거나, 당회 중에 장로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고 하며, 목사의 목회소신을 꺾어 버리려고 하는 경우 심한 갈등과 좌절을 느낀다고 조사된 것을 보면, 이 역시 장로가 목사의 사역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목사를 교회행정책임자로서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모든 목사들이 자질 부족일 것이라고 보지는 않으며, 모든 장로들이 또한 한결같이 일부러 목사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무시하거나, 문제 삼으려고 하

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설교자로서 혹은 교회 행정책임자로서 목사에게 거는 기대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혹은, 장로가 어떻게 목사를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역내용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혹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회 안에는 사역내용설명서라는 용어도 없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없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목사와 장로의 사역내용에 대하여, 교회헌법과 교인들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인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교회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목사와 장로의 사역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서 사역내용설명서로 제정하여 목사와 장로들에게 인식하도록 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여겨진다.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들을 위한 지침과 직무내용설명서가 배부된다. 새로운 부서로 인사 이동될 경우도 새로운 직무지침을 숙지해야 하고 직무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어야만 한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할 때도 매뉴얼과 설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 있다. 직원은 직무내용대로 근무하고, 물건은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들을 위한 사역내용설명서 제정과 숙지가 이루어진다면, 갈등요인은 충분히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성경과 교회헌법에는 목사와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충실하나, 교회 내에서 실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역내용설명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보다 더 친절하고 구체적인 사역내용설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성경과 헌법이 규정하는 사역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인식하고, 교육하고, 훈련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역내용의 재인식은 갈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물론, 사역내용설명서를 어떤 포맷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짜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각 교단의 헌법에 기재된 분석내용을 보다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제는 다음 연구의 과제로 남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사역내용설명서 제정과 역할재인식이 이루어진다면, 당회의 갈등은 훨씬 완화되거나 미연에 제거될 것이며, 목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자신감과 확신에 찬 사역을, 장로들은 목사와 협력하는 자의 위치에서 즐거운 사역을 함으로서, 명실공히 교회와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줄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신총회(1992)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 서울
- 김경원(1999) 당회운영의 노하우를 듣는다(목회와 신학, 1999년10월호)168-172
- 김동호(1999) 당회운영 이대로 좋은가?(목회와 신학, 1999년10월호)154-159

김상복(1999) 교인과의 갈등과 목회자의 리더쉽(목회와 신학,1999년10월호)88-97
이장직(2007.9.26) 중앙일보
이정석(2001) 장로직의 세속화 (목회와 신학, 2001년 11월호)110-122
이상화(1997) 한국교회 장로제도운영에 문제가 있다(목회와 신학,1997년5월호)92-100
이상화(1997) 한국장로교 정치제도는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목회와 신학,1997년8월호)122-131
임택진(1994) 장로회정치해설,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임택진(2007.9.7) C3TV(인터넷방송)
최종태(2006) 현대인사관리론, 서울, 박영사
통합총회(1994) 헌법, 한국장로교출판사,서울
합동총회(2000) 헌법,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국,서울
홍치모(1996) 장로제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신학지남,1996,제247호)153-170
PCA GA(2002) The Book of Church Order. Lawrenceville, Georgia
PCUSA GA(2006) The Book of Church Order,Louisville, Kentucky